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9호 2018. 9. 7(금)

선 람	기관의 장

##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25호 남원시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남원시 규칙 제626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4

## 훈령

- 남원시 훈령 제389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 38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 107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67
- 남원시 고시 제2018 - 109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 87
- 남원시 공고 제2018 - 11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백두대간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조성사업) -- 90

##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1475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 91
- 남원시 공고 제2018- 1479호 도로공고(변경,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04-20 외) ----- 97
- 남원시 공고 제2018- 1500호 도로공고(변경, 남원시 내철동 10-6) ----- 98
- 남원시 공고 제2018- 1502호 도로공고(변경, 남원시 노암동 225-4 외) ----- 9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9월 07일

남원시 규칙 제 625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로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 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장)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신청 방법, 신고·신청 등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시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



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제1호중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를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시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

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14호서식]

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 .

신고자 : (인)

[별지 제15호서식]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 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 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p>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p>라. ----- ----- ----- -----<u>법인·단체</u></p>
<p>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u>단체</u></p>	<p>마. ----- ----- <u>법인·단체</u></p>
<p>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p>	<p>바. ----- ----- <u>법인·단체</u></p>
<p>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p>사. ----- ----- ----- <u>법인·단체</u></p>
<p>아. 그 밖에 행정기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u>단체</u></p>	<p>아. ----- ----- ----- <u>법인·단체</u></p>
<p><u>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비등을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u>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u>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10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 행	개 정 안
<p>1. <u>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u></p> <p>2. <u>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3. <u>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4. <u>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시 소속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7. <u>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1. <u>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u>공무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3. <u>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4. <u>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u></p> <p>6.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u></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 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p> <p>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p> <p>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p> <p>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p> <p>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p> <p>8.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장)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p> <p>9. 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10.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p> <p>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직무 참여의 일시중지</u></li> <li>2. <u>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u></li> <li>3. <u>직무 재배정</u></li> <li>4. <u>전보</u></li> </ol>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li> <li>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li> <li>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li> </ol> <p>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신청 방법, 신고·신청 등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5조의2(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li> <li>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li> <li>3.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li> <li>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li> </ol>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p> <p>3. <u>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4. <u>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5. <u>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u></p> <p>② <u>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u></p> <p>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u>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② <u>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③ <u>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u></p> <p>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u>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u></p> <p>② <u>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u>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u></p>	<p><u>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u></p> <p>③ <u>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u></p> <p><u>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u></p> <p>① <u>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u></p> <p>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 <u>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u></p>

현 행	개 정 안
<p>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u>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u></p> <p>1. <u>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2. <u>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3. <u>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u></p> <p>4. <u>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5. <u>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u></p> <p>6. <u>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7. <u>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8. <u>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u></p> <p>9. <u>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u></p> <p>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u>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p>	<p>하다.</p> <p>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li> <li>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li> </ol>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p> <p>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p>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민의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9월 07일

남원시 규칙 제 626 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민의 장”을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한부문에 3명이상”을 “제7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은 한 부문에 3명 이상”으로, “자가 없을”을 “사람이 없을”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원시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조례 시행에</u> ----- ----- -----.</p>
<p>제2조(심사기준) ①<u>시민의 장</u>은 조례 제3조의 <u>각호</u>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u>자</u>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된 <u>자</u>에 한하여 심사한다.</p>	<p>제2조(심사기준) ①<u>남원시민의 장</u> (이하 "<u>시민의 장</u>"이라 한다)-- <u>각호</u>----- ----- <u>사람</u> ----- --- <u>사람</u>----- -.</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 <u>사람</u>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u>를 받은 <u>자</u></li> <li>2.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u>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u>자</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li> <li>2. ----- ----- ----- <u>사람</u></li> </ol>
<p>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u>조례 제6조의 규정</u>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u>추천자는</u>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u>제6조에 따른</u> ----- ----- <u>다음 각 호의 서류</u> ----- ----- <u>를 붙여 시장</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u>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가 남</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p>&lt;삭제&gt;</p>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9월 07일

남원시 훈령 제 389 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운영·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

면·동 (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점검·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총괄부서 : 민원과장
2. 관리부서 : 관리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직제상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후임자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 5. 공간정보 보안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의 보안 관리
- 2. 관리부서에서 공간정보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보관 관리
- 4.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에 관한 이행 여부 확인

③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보안 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민원

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한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 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업무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관리책임자 정 : 총괄부서 보안담당관

나. 관리책임자 부 : 공간정보 업무담당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관리책임자 정 : 총괄부서 보안담당관

나. 관리책임자 부 : 공간정보 업무담당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시장은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다만,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 실시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시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시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는 미리 보안담당관에게 공간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2. 소속기관·단체의 재직여부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여부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시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 제22조(보안지도)**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보안점검)**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관리부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보안점검·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4조(보안교육)**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 제25조(보안사고 조치)**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사고 유발자 인적사항·사고내용·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9월 07일

남원시 훈령 제 389 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운영·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

면·동 (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점검·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총괄부서 : 민원과장
2. 관리부서 : 관리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직제상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후임자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 5. 공간정보 보안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의 보안 관리
- 2. 관리부서에서 공간정보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보관 관리
- 4.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에 관한 이행 여부 확인

③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보안 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민원

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한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 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업무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관리책임자 정 : 총괄부서 보안담당관

나. 관리책임자 부 : 공간정보 업무담당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관리책임자 정 : 총괄부서 보안담당관

나. 관리책임자 부 : 공간정보 업무담당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시장은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다만,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 실시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시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시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는 미리 보안담당관에게 공간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2. 소속기관·단체의 재직여부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여부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시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 제22조(보안지도)**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보안점검)**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관리부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보안점검·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4조(보안교육)** ①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 제25조(보안사고 조치)**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사고 유발자 인적사항·사고내용·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구분	관리관	관리부서	관리담당자			목록작성일	시스템 시명칭	레이어명		정보의 주요내용 (레이어 명)	축 범위	데이터 구축 형태	데이터 유형		최 생 일	갱 신 기	중 신 자 최 갱 일	공 개 구 분	비용			공 적 제 실 건	공 개/ 공 제 근	비 고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한 글	영 문				백 터	레 스 터					구 분	금 액	징 수 근 거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 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	공간정보	자료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lt;별지 제4호서식&gt;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신원사항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 보 안 각 서 (외주용역 업체용)

본인(기관)은 남원시에서 제공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제반 보안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공간정보의 무단복제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목적 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며, 내용을 임의로 수정·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복사하여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산출물을 포함하여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전부 반납하며,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4.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남원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사 업 명					
수 행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직 위		성 명		서 명
사업수행자	부 서 명				연락처
	직 위		성 명		서 명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 하

남원시 고시 제 2018 - 107 호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하고, 같은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남원시 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9월 7일

◇ 다 음 ◇

### 1. 관광단지 개요

- 관광단지명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 위 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울리 산131일원
- 지정 면적 : 795,133m<sup>2</sup>
- 지정 일 : 2018. 9. 3.

### 2. 조성계획 개요

- 조성면적 : 795,133m<sup>2</sup>
- 계획기간 :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 190,272백만원 (민간 190,272백만원)
- 시행자 : 신한레저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남식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	
도	시 지 역	30,647,473	-	30,647,473	4.1	
도	시 외 지 역	722,162,527	-	722,162,527	95.9	
관 리 지 역	소	계	증) 375,430	276,793,032	36.8	
	보 전 관 리 지 역	78,742,729	감) 68,998	78,673,731	10.5	
	생 산 관 리 지 역	66,763,743	감) 9,637	66,754,106	8.9	
	계 획 관 리 지 역	130,911,130	증) 454,065	131,365,195	17.4	
	농 립 지 역	337,750,573	감) 375,430	337,375,143	44.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07,994,352	-	107,994,352	14.3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 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 정 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㉔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산면 옥울리 산131번지 일원	-	증)795,133	795,133	금회

5.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별첨) 1부.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별첨) 1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

**I** | **관광단지 개요**

**□ 관광단지 개요**

- 관광단지명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 일원
- 지정면적 : 795,133m<sup>2</sup>
- 지정일 : 2018. 9. 3.
- 지정신청자 : 남원시장

**□ 조성계획 개요**

- 관광단지명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일원
- 지정면적 : 795,133m<sup>2</sup>
- 주요시설 : 대중골프장(9홀), 가족호텔(110실) 및 워터파크,  
                  한옥호텔(10실),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아트뮤지엄 등
- 계획기간 : 2017년 ~ 2022년
- 총사업비 : 190,272백만원 (민자 100%)
- 사업시행자 : 신한레저주식회사 박남식

## Ⅱ 토지이용계획

### ① 토지이용계획 총괄

시설지구	면적(m <sup>2</sup> )	시설내용	구성비(%)	비고
<b>합 계</b>	<b>795,133</b>		<b>100.0</b>	
공공·편익시설지구	31,422	주차장, 도로, 관리동 등	4.0	
숙박시설지구	46,058	가족호텔, 워터파크, 한옥호텔	5.8	
상가시설지구	13,052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등	1.6	
운동·오락시설지구	458,680	대중골프장 등	57.7	
휴양·문화시설지구	50,143	테마식물원, 아트뮤지엄 등	6.3	
기타시설지구	195,778	조성녹지, 보전녹지 등	24.6	

### ② 지목 및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소유자별 지목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b>합 계</b>	<b>104</b>	<b>795,133.0</b>	<b>8</b>	<b>5,668.0</b>	<b>1</b>	<b>46,203.0</b>	<b>95</b>	<b>743,242.0</b>
전	9	12,825.0	-	-	-	-	9	12,825.0
답	13	24,730.0	-	-	-	-	13	24,730.0
과수원	1	6,609.0	-	-	-	-	1	6,609.0
임야	67	716,242.5	-	-	1	46,203.0	66	670,039.5
구거	8	5,688.0	8	5,688.0	-	-	-	-
목장용지	1	12,694.0	-	-	-	-	1	12,694.0
창고용지	1	2,224.0	-	-	-	-	1	2,224.0
잡종지	2	7,414.0	-	-	-	-	2	7,414.0
체육용지	1	5,017.5	-	-	-	-	1	5,017.5
묘지	1	1,689.0	-	-	-	-	1	1,689.0

### ③ 농지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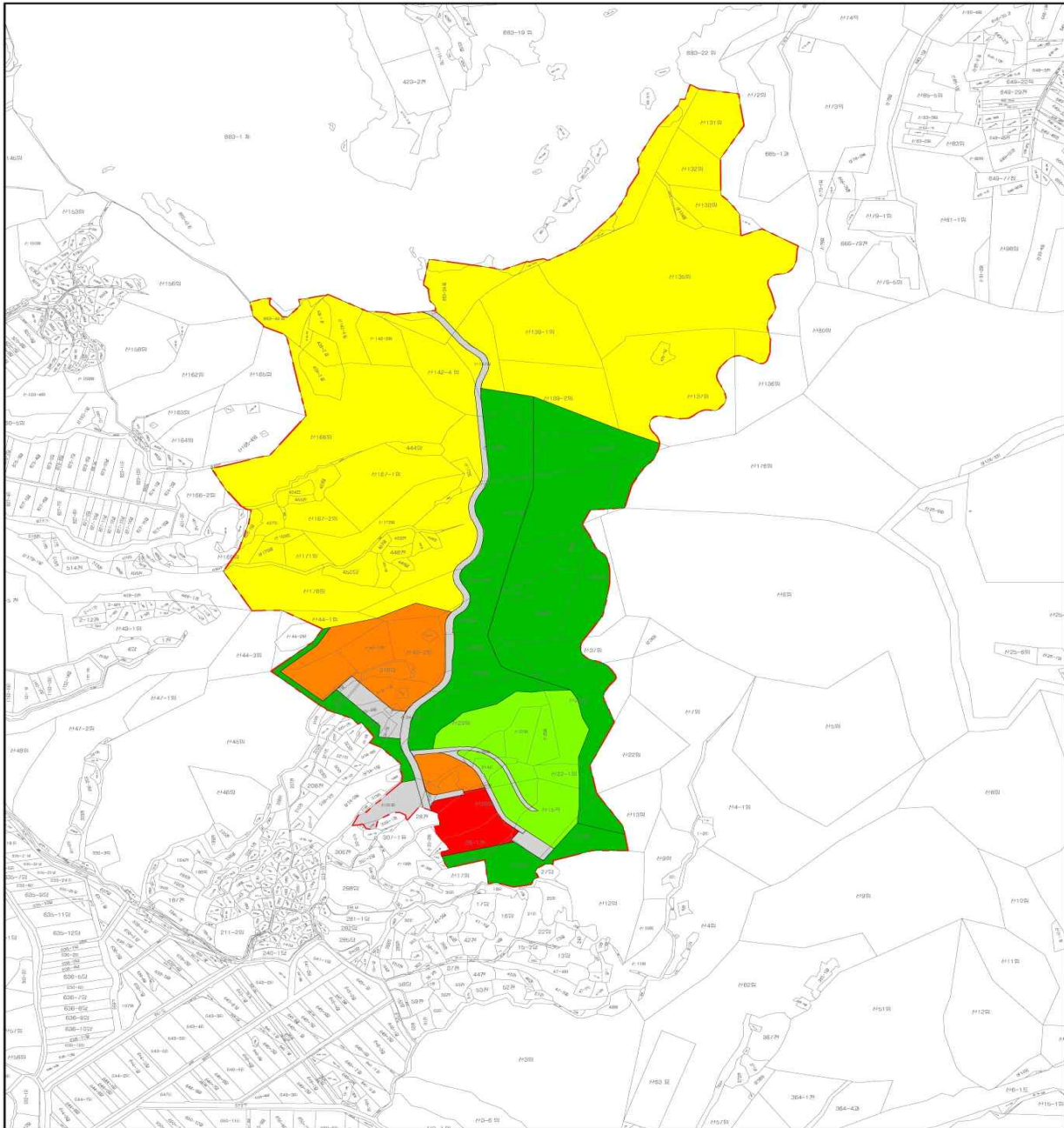
구분	합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비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b>합 계</b>	<b>104</b>	<b>795,133</b>	-	-	<b>8</b>	<b>9,826</b>	<b>96</b>	<b>785,307</b>	
소 계	23	44,164	-	-	5	7,085	18	37,079	
농 지	전	12,825	-	-	2	843	7	11,982	
	답	24,730	-	-	3	6,242	10	18,488	
	과수원	6,609	-	-	-	-	1	6,609	
기타농지	1	818	-	-	-	-	1	818	
비 농 지	80	750,151	-	-	3	2,741	77	747,410	

### ④ 임야분포현황

소유자별 산지구분별		합 계(m <sup>2</sup> )	국유림(m <sup>2</sup> )	공유림(m <sup>2</sup> )	사유림(m <sup>2</sup> )	비고
<b>합 계</b>		<b>716,242.5</b>	-	<b>46,203.0</b>	<b>670,039.5</b>	
소 계		385,253.9	-	30,588.0	354,665.9	
보전산지	임업용	385,253.9	-	30,588.0	354,665.9	
	공익용	-	-	-	-	
준보전산지		330,988.6	-	15,615.0	315,373.6	



## 5 토지이용계획도



<b>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b>		<b>범</b>	
<b>토지이용계획도</b>		구역 계	운동오락시설
S = 1:3,500 0 35 70 140 350m		공공편의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기타 및 녹지
		상가시설지구	
		<b>례</b>	

- 붙 임 : 1.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3.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도서 1식(별첨)

## 첨부 1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

### ① 토지이용계획 세부 내용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관광단지 합계	<b>795,133</b>	<b>100%</b>	
공공편익시설지구	<b>31,422</b>	<b>4.0%</b>	
주차장	7,920	1.0%	
도로	18,164	2.3%	
관리동	5,338	0.7%	
숙박시설지구	<b>46,058</b>	<b>5.8%</b>	
가족호텔	38,970	4.9%	호텔 110실 / 워터파크, 컨퍼런스룸
한옥호텔	7,088	0.9%	10실
상가시설지구	<b>13,052</b>	<b>1.6%</b>	
남원전통문화 테마시설	13,052	1.6%	저잣거리, 공방 등
운동오락시설지구	<b>458,680</b>	<b>57.7%</b>	
대중제골프장	458,680	57.7%	
휴양문화시설지구	<b>50,143</b>	<b>6.3%</b>	
아트뮤지엄	20,376	2.6%	실외전시장, 야영장등
테마식물원	29,767	3.7%	
기타시설지구	<b>195,778</b>	<b>24.6%</b>	
조성녹지	89,549	11.3%	
보전녹지	106,229	13.4%	

## ② 시설 배치계획

시설구분 및 시설명	부지면적(m <sup>2</sup> )	건축물 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동수	객실 수	
관광단지합계	<b>795,133</b>	<b>10,727</b>	<b>21,572</b>				
공공편익시설지구	<b>31,422</b>	<b>336</b>	<b>1,092</b>				
주 차 장	7,920						
도 로	18,164						
관 리 동	5,338	336	1,092	4	1		
숙박시설지구	<b>46,058</b>	<b>7,597</b>	<b>17,084</b>		<b>13</b>	<b>120</b>	
가족호텔	38,970	6,569	16,056	10	1	110	
한옥호텔	7,088	1,028	1,028	1	12	10	
상가시설지구	<b>13,052</b>	<b>1,161</b>	<b>1,161</b>		<b>15</b>		
남원전통문화 테마시설	13,052	1,161	1,161	1	15		
운동오락시설지구	<b>458,680</b>	<b>926</b>	<b>1,066</b>		<b>2</b>		
대중제골프장	458,680	926	1,066	1	2		
휴양문화시설지구	<b>50,143</b>	<b>707</b>	<b>1,169</b>		<b>1</b>		
아트뮤지엄	20,376	707	1,169	2	1		
테마식물원	29,767						
기타시설지구	<b>195,778</b>						
조성녹지	89,549						
보전녹지	106,229						

### ③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사업비(백만원)			비고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총계	공공	민간	
관광단지 합계	<b>795,133</b>	<b>21,572</b>	<b>190,272</b>	-	<b>190,272</b>	
<b>공공편의시설지구</b>	<b>31,422</b>	<b>1,092</b>	<b>34,150</b>	-	<b>32,560</b>	
주차장	7,920	-	10,950	-	10,420	
도로	18,164	-	19,200	-	18,670	
관리동	5,338	1,092	4,000	-	3,470	
<b>숙박시설지구</b>	<b>46,058</b>	<b>17,084</b>	<b>94,600</b>	-	<b>88,710</b>	
가족호텔	38,970	16,056	86,550	-	81,455	
한옥호텔	7,088	1,028	8,050	-	7,255	
<b>상가시설지구</b>	<b>13,052</b>	<b>1,161</b>	<b>12,050</b>	-	<b>10,460</b>	
남원전통문화 테마시설	13,052	1,161	12,050	-	10,460	
<b>운동오락시설지구</b>	<b>458,680</b>	<b>1,066</b>	<b>26,772</b>	-	<b>25,182</b>	
대중제골프장	458,680	1,066	26,772	-	25,182	
<b>휴양문화시설지구</b>	<b>50,143</b>	<b>1,169</b>	<b>16,700</b>	-	<b>15,110</b>	
아트뮤지엄	20,376	1,169	9,350	-	8,555	
테마식물원	29,767	-	7,350	-	6,555	
<b>기타시설지구</b>	<b>195,778</b>		<b>6,000</b>	-	<b>6,000</b>	
조성녹지	89,549		6,000	-	6,000	
보전녹지	106,229	-	-	-		
<b>기타</b>					<b>12,250</b>	
토지매입					7,552	
기타비용					4,698	

####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2017년 까 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관광단지 합계	190,272	7,950	6,100	46,426	40,592	33,362	55,842	
공공편익시설지구	32,560	-	-	13,936	12,700	-	5,924	
주차장	10,420	-	-	4,500	4,000	-	1,920	
도로	18,670	-	-	8,500	8,700	-	1,470	
관리동	3,470	-	-	936	-	-	2,534	
숙박시설지구	88,710	-	-	11,636	19,238	32,362	25,474	
가족호텔	81,455	-	-	11,168	19,238	32,362	18,687	
한옥호텔	7,255	-	-	468	-	-	6,787	
상가시설지구	10,460	-	-	1,718	1,718	1,000	6,024	
남원전통문화 테마시설	10,460	-	-	1,718	1,718	1,000	6,024	
운동오락시설지구	25,182	-	2,000	18,936	-	-	4,246	
대중제골프장	25,182	-	2,000	18,936	-	-	4,246	
휴양문화시설지구	15,110	-	-	-	936	-	14,174	
아트뮤지엄	8,555	-	-	-	468	-	8,087	
테마식물원	6,555	-	-	-	468	-	6,087	
기타시설지구	6,000	-	-	-	6,000	-	-	
조성녹지	6,000	-	-	-	6,000	-	-	
기 타	12,250	7,950	4,100	200				
토지매입	7,552	7,052	300	200				
기타비용	4,698	898	3,800					

## 첨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합 계 (104필지)				1,702,996 .4	795,133. 0	-	-
1	금성리	28-1	전	6,062.0	6,047.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2	금성리	314	답	4,179.0	4,17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3	금성리	315	전	179.0	17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4	금성리	316-1	과	7,087.0	6,60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	금성리	316-2	임	400.0	40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6	금성리	316	답	2,112.0	2,112.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7	금성리	317	답	1,157.0	1,157.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8	금성리	318	임	1,408.0	1,05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9	금성리	325	전	1,336.0	1,336.0	조성하	남원시 도통동 144 부영아파트 101-103
10	금성리	615-5	구	5,295.0	818.0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금성리	산14	임	10,711.0	10,71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2	금성리	산15	목	12,694.0	12,69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3	금성리	산16	임	6,744.0	6,74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4	금성리	산20-6	임	1,520.0	1,52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5	금성리	산20	임	12,190.0	12,13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6	금성리	산21	임	6,149.0	6,149.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7	금성리	산22-1	임	4,239.0	4,239.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8	금성리	산25	임	23,405.0	19,38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19	금성리	산26	임	4,364.0	4,36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우리 산142-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20	금성리	산27	임	5,157.0	5,15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1	금성리	산28	임	2,771.0	2,77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2	금성리	산29	임	26,975.0	26,97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3	금성리	산30	임	1,190.0	1,19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4	금성리	산31	임	5,950.0	5,95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5	금성리	산32	임	298.0	29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6	금성리	산34-7	임	1,032.0	1,03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7	금성리	산34-9	임	5,855.0	5,85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8	금성리	산35	임	8,331.0	8,33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29	금성리	산36	임	5,950.0	5,95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0	금성리	산37	임	13,884.0	7,21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1	금성리	산38	임	17,058.0	17,05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2	금성리	산39	임	4,364.0	4,36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3	금성리	산40	임	992.0	99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4	금성리	산41	임	15,868.0	10,95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5	금성리	산42	임	3,570.0	3,57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6	금성리	산43-1	임	24,595.0	24,59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7	금성리	산43-2	임	9,774.0	9,77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8	금성리	산43-4	임	1,874.0	1,84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39	금성리	산43-5	임	538.0	53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0	금성리	산43-6	임	477.0	477.0	김태용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460
41	금성리	산44-1	임	12,673.0	9,743.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42	금성리	산45-5	임	8,075.0	7,25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3	금성리	산45-1	임	5,470.0	5,47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4	옥율리	436-1	답	1,190.0	1,190.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45	옥율리	439-1	창	2,224.0	2,22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6	옥율리	439-2	잡	2,970.0	2,97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7	옥율리	439-3	잡	4,444.0	4,44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48	옥율리	444	답	2,145.0	2,145.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49	옥율리	445	답	489.0	48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0	옥율리	446	전	737.0	737.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1	옥율리	447	전	952.0	952.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2	옥율리	448	전	1,352.0	1,352.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3	옥율리	449	답	740.0	740.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4	옥율리	450-1	답	1,785.0	1,785.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5	옥율리	450	답	3,957.0	3,957.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6	옥율리	451	답	734.0	734.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7	옥율리	452	전	1,379.0	1,37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8	옥율리	453	답	2,562.0	2,562.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59	옥율리	454	묘	1,689.0	1,689.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60	옥율리	455	전	688.0	688.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61	옥율리	456	전	155.0	155.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62	옥율리	457	답	2,271.0	2,271.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63	옥율리	458-1	답	1,782.0	1,409.0	박남식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1-1 스카이빌라 디-20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64	옥율리	740	구	1,028.0	1,028.0	국(건설부)	-
65	옥율리	760-2	구	11,022.0	974.0	국(건설부)	-
66	옥율리	883-1	체	732,936.8	5,017.5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67	옥율리	883-22	임	23,809.3	8,54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68	옥율리	883-32	임	278.6	278.6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69	옥율리	883-33	임	512.9	512.9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0	옥율리	883-34	임	15,135.5	14,22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1	옥율리	883-46	임	5,692.3	5,116.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2	옥율리	산131	임	10,652.0	10,65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3	옥율리	산132	임	8,737.0	8,73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4	옥율리	산133	임	6,993.0	6,993.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5	옥율리	산134	임	1,388.0	1,38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6	옥율리	산135	임	94,685.0	83,88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7	옥율리	산136	임	19,835.0	3,59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8	옥율리	산137	임	44,628.0	35,40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79	옥율리	산139-1	임	28,382.0	28,38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0	옥율리	산139-2	임	25,190.0	25,190.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1	옥율리	산141	임	11,908.0	11,90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2	옥율리	산142-2	임	7,122.0	7,122.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3	옥율리	산142-4	임	13,699.0	13,699.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4	옥율리	산142-6	임	6,354.0	6,35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5	옥율리	산142-8	임	777.0	77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86	옥율리	산166	임	54,152.0	52,59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7	옥율리	산167-1	임	21,025.0	21,02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8	옥율리	산167-2	임	6,645.0	6,64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89	옥율리	산168	임	1,388.0	1,388.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0	옥율리	산169	임	6,347.0	1,61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1	옥율리	산170	임	2,479.0	2,479.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2	옥율리	산171	임	5,157.0	5,157.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3	옥율리	산172	임	14,281.0	14,28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4	옥율리	산173	임	1,983.0	1,983.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5	옥율리	산174	임	18,446.0	18,446.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6	옥율리	산175	임	14,182.0	13,511.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7	옥율리	산176	임	87,570.0	4,264.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98	옥율리	산177	임	46,810.0	46,203.0	남원시	-
99	옥율리	산178	임	19,835.0	19,835.0	신한레저주식회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42-1
100	옥율리	산208-1	구	362.0	362.0	국(건설부)	-
101	옥율리	산217	구	99.0	99.0	국(건설부)	-
102	옥율리	산218	구	992.0	992.0	국(건설부)	-
103	옥율리	산219	구	198.0	198.0	국(건설부)	-
104	옥율리	산220	구	2,083.0	1,217.0	국(건설부)	-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	
도 시 지 역	30,647,473	-	30,647,473	4.1	
관 리 지 역	276,417,602	증) 375,430	276,793,032	36.8	
보 전 관 리 지 역	78,742,729	감) 68,998	78,673,731	10.5	
생 산 관 리 지 역	66,763,743	감) 9,637	66,754,106	8.9	
계 획 관 리 지 역	130,911,130	증) 454,065	131,365,195	17.4	
농 립 지 역	337,750,573	감) 375,430	337,375,143	44.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07,994,352	-	107,994,352	14.3	

주 : 기정면적은 남원시 고시 제2017-94호(2017.8.4)에 근거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436-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 획 관 리 지 역	68,998	100% 이하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14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9,637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농림지역		375,430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㉞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	증)795,133	795,133	금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변 경 사 유
신설	㉞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795,133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 ③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총 계	795,133	100.0	
관 광 · 휴 양 시 설 용 지	567,933	71.3	
숙 박 시 설 지 구	46,058	5.8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	38,970	4.9	
한 옥 호 텔	7,088	0.9	
상 가 시 설 지 구	13,052	1.6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13,052	1.6	
운 동 · 오 락 시 설 지 구	458,680	57.7	
대 중 골 프 장	458,680	57.7	
코 스 시 설	176,753	22.2	
조 성 녹 지	184,356	23.2	· 골프장 면적 대비 61.5%
보 전 녹 지	97,571	12.3	
휴 양 · 문 화 시 설 지 구	50,143	6.2	
테 마 식 물 원	29,767	3.7	
아 트 뮤 지 엄	20,376	2.5	
공 공 시 설 용 지	31,422	4.0	
내 부 도 로	18,164	2.3	
주 차 장	7,920	1.0	
관 리 동	5,338	0.7	
녹 지 용 지	195,778	24.7	· 골프장 녹지면적 : 281,927m <sup>2</sup> · 녹지용지 면적 : 195,778m <sup>2</sup> · 총 녹지면적 : 477,705m <sup>2</sup> · 총 녹지비율 : 60.1%
조 성 녹 지	89,549	11.3	
보 전 녹 지	106,229	13.4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합 계		795,133	-		795,133		
관광·휴양 시설용지	숙박시설	I	46,058	1	대산면 금성리 316번지 일원	38,970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
				2	대산면 금성리 314번지 일원	7,088	한옥호텔
	상가시설	II	13,052	1	대산면 금성리 산20번지 일원	13,052	남원전통문화 테마시설
	운동·오락시설	III	458,680	1	대산면 옥율리 산166번지 일원	458,680	대중골프장
	휴양·문화시설	IV	50,143	1	대산면 금성리 산27번지 일원	29,767	테마식물원
2				대산면 금성리 산15번지 일원	20,376	아트뮤지엄	
공공시설용지	V	31,422	1	대산면 옥율리 산177번지 일원	18,164	내부도로	
			2	대산면 금성리 산43-4번지 일원	7,920	주차장	
			3	대산면 금성리 산31번지 일원	5,338	관리동	
녹지용지	VI	195,778	1	대산면 옥율리 산177번지 일원	89,549	조성녹지	
			2	대산면 옥율리 산177번지 일원	106,229	보전녹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16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I-2 (한옥호텔)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14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II-1 (남원 전통문화 테마시설)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0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1 (대중골프장)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66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Ⅳ-2 (아트뮤지엄)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15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Ⅴ-3 (관리동)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31 일원	신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 기숙사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남원시 고시 제2018 - 109호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남원 백두대간힐링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사항(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남 원 시 장

2018년 9월 7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시행

나.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사업면적(m <sup>2</sup> )	사업시행자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	문화공원	4,000m <sup>2</sup> (전체 210,545)	남원시청 (산림과)

#### 2. 사업의 착구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8.12.31.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합		계			406,639	4,000					
1	운봉읍 공안리	산32	1	임	406,639	4,000	남원시 운봉읍	-	-	-	-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 4.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서

###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변경후	
합 계	210,545	-	210,545	922.2	-	922.2	
도 로	8,333	증)19	8,351	-	-	-	
광 장	313	-	313	-	-	-	
조경시설	2,436	증)20	2,456	-	-	-	
휴양시설	4,811	증)913	5,724	-	-	-	
운동시설	115	-	115	-	-	-	
교양시설	432	증)150	582	-	-	-	
편익시설	3,545	증)65	3,610	298.6	-	298.6	
공원관리시설	734	-	734	623.6	-	623.6	
녹 지	189,826	감)1,167	188,659	-	-	-	

### 2) 세부시설조서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210,545	-	210,545	627.5	-	627.5	922.2	-	922.2	
도 로	소 계				8,333	증)19	8,352	-	-	-	-	-	-	
	-	-	도 로	도 로	8,333	증)19	8,352	-	-	-	-	-	-	
광 장	소 계				313	-	313	-	-	-	-	-	-	
	1-1	1-1	광장1	광장1	221	-	221	-	-	-	-	-	-	
	1-2	1-2	광장2	광장2	92	-	92	-	-	-	-	-	-	
조 경 시설	소 계				2,436	증)20	2,456	-	-	-	-	-	-	오타정정
	2-1	2-1	화계	화계	436	-	436	-	-	-	-	-	-	
	2-2	2-2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	2,020	-	2,020	-	-	-	-	-	-	
휴 양 시설	소 계				4,811	증)913	5,724	-	-	-	-	-	-	
	3-1	3-1	휴게쉼터1	휴게쉼터1	380		380	-	-	-	-	-	-	
	3-2	3-2	휴게쉼터2	휴게쉼터2	275		275	-	-	-	-	-	-	
	3-3	3-3	휴게쉼터3	휴게쉼터3	309		309	-	-	-	-	-	-	
	3-4	3-4	백두대간산림욕쉼터	백두대간힐링캠핑장	3,847	증)173	4,020	-	-	-	-	-	-	
	-	3-5	-	백두대간힐링캠핑장		증)740	740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b>총 계</b>					<b>210,545</b>	-	<b>210,545</b>	627.5	-	627.5	922.2	-	922.2	
운동시설	<b>소 계</b>				<b>115</b>	-	<b>115</b>	-	-	-	-	-	-	
	4-1	4-1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115	-	115	-	-	-	-	-	-	
교양시설	<b>소 계</b>				<b>432</b>	증)150	<b>582</b>	-	-	-	-	-	-	
	5-1	5-1	백두대간학습장	백두대간학습장	91	-	91	-	-	-	-	-	-	
	5-2	5-2	백두산학습장	백두산학습장	111	-	111	-	-	-	-	-	-	
	5-3	5-3	금강산학습장	금강산학습장	114	-	114	-	-	-	-	-	-	
	5-4	5-4	설악산학습장	설악산학습장	116	-	116	-	-	-	-	-	-	
	5-5	5-5	약용초화원	약용초화원	-	-	-	-	-	-	-	-	-	
	5-6	5-6	방향식물원	방향식물원	-	-	-	-	-	-	-	-	-	
	-	5-7	-	공연장	-	증)150	150	-	-	-	-	-	-	
<b>소 계</b>					<b>3,545</b>	증)65	<b>3,610</b>	298.6	-	298.6	298.6	-	298.6	
편의시설	6-1	6-1	주차장1	주차장1	2,151	-	2,151	-	-	-	-	-	-	
	6-2	6-2	주차장2	주차장2	432	-	432	-	-	-	-	-	-	
	6-3	6-3	주차장3	주차장3	40	-	40	-	-	-	-	-	-	
	6-4	6-4	주차장4	주차장4	80	-	80	-	-	-	-	-	-	
	6-5	6-5	주차장5	주차장5	80	-	80	-	-	-	-	-	-	
	6-6	6-6	주차장6	주차장6	78	-	78	-	-	-	-	-	-	
	6-7	6-7	주차장7	주차장7	90	-	90	-	-	-	-	-	-	
	6-8	6-8	주차장8	주차장8	87	-	87	-	-	-	-	-	-	
	6-9	6-9	주차장9	주차장9	160	-	160	-	-	-	-	-	-	
	6-10	6-10	전망대	전망대	164	-	164	-	-	-	-	-	-	
	6-11	6-11	화장실1	화장실1	133	-	133	30.4	-	30.4	30.4	-	30.4	
	6-12	6-12	화장실2	화장실2	50	-	50	25.0	-	25.0	25.0	-	25.0	
	6-13	6-13	화장실3	화장실3	-	-	-	30.4	-	30.4	30.4	-	30.4	
	6-14	6-14	화장실4	화장실4	-	-	-	30.4	-	30.4	30.4	-	30.4	
	6-15	6-15	화장실5	화장실5	-	-	-	30.4	-	30.4	30.4	-	30.4	
	6-16	6-16	화장실6	화장실6	-	-	-	30.4	-	30.4	30.4	-	30.4	
	6-17	6-17	화장실7	화장실7	-	-	-	30.4	-	30.4	30.4	-	30.4	
	6-18	6-18	화장실8	화장실8	-	-	-	30.4	-	30.4	30.4	-	30.4	
	6-19	6-19	화장실9	화장실9	-	-	-	30.4	-	30.4	30.4	-	30.4	
	6-20	6-20	화장실10	화장실10	-	-	-	30.4	-	30.4	30.4	-	30.4	
	-	6-21	-	음수대	-	증)65	65	-	-	-	-	-	-	
<b>소 계</b>					<b>734</b>	-	<b>734</b>	328.9	-	328.9	623.6	-	623.6	
관리시설	7-1	7-1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607	-	607	328.9	-	328.9	623.6	-	623.6	
	7-2	7-2	상수도가압장	상수도가압장	127	-	127	-	-	-	-	-	-	
녹지	<b>소 계</b>				<b>189,826</b>	감)1,167	<b>188,659</b>	-	-	-	-	-	-	
	8-1	8-1	녹지	녹지	189,826	감)1,167	188,659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8-110호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백두대간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조성사업)

남원 백두대간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9월 7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나. 사업의 명칭 : 백두대간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28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 놀이기구 및 유아풀 시설 설치 795㎡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운봉읍 주촌리	산55-5	임	12,047	17	남원시		
2		637-2	전	8.0	2	남원시		
3		528	대	24,594.6	776	남원시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공고 제2018-1475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

##### 나.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7928),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bank@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담당자 최용재(전화 : 063-620-79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지원과장

##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

나.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03. ~ 2018. 09. 24.(21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479 호

##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 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8-1 3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04-20, 704-22, 704-24, 704-19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전북 노회교회 유지재단	2018-건축과- 신축허가-56	31.2	6	189	남 원 시 인 월 면 서 무 리 704, 704-7	남 원 시 인 월 면 서 무 리 704-21, 704-23	분 할 측 량 에 따 른 지 번 및 면 적 변 경

◎ 남원시 공고 제 2018 -1500 호

##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8-1	남원시 내척동 10-6	채*석	2018-건축과- 협의건축물-1	15.9	10	159	167㎡	159㎡	면적변경 (분할측량)

◎ 남원시 공고 제 2018 -1502호

##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 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7-2 7	남원시 노암동 225-4 225-5 225-15 225-21 225-42	권*호	2017-건축과- 신축신고-510	160	6	1,359	1,505㎡	1,359㎡	면 적 변 경 (분할측량 및 지번부여)
							노 암 동 225(1,145 ㎡)	노 암 동 225-4(4㎡) 225-5(4㎡)	
							225-4(8㎡)	225-15(547 ㎡)	
							225-5(4㎡)		
							225-6(211 ㎡)	225-21(595 ㎡)	
							224-3(137 ㎡)	225-42(208 ㎡)	